미래융합대학 학사처리(학사과정)에 관한 내규

(제정일 2019.1.1., 최종개정일 2023.7.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성인학습 재직자 교육을 전담하는 미래융합대학에 해당하는 학칙 및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의 시행에 있어 학사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교육과정

- 제2조(핵심역량) 미래융합대학은 대학의 明·知·人 인재양성이라는 인재상에 기반하여 6대 핵심역량을 추진한다.
 - ②미래융합대학의 6대 핵심역량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학과별 교육과정에 핵심역량을 반영한다.
 - 1.문제해결
 - 2.지식탐구
 - 3.기본지식
 - 4. 유복합
 - 5.자기계발
 - 6.의사소통
- 제3조(평생지도교수제) 미래융합대학의 성인학습 재직자를 대상으로 평생지도교수를 임명하여 학습자의 지도 및 상담 등을 통해 학습자의 진로, 학습, 취·창업을 전담하여 지원한다.
- **제4조(융합전공학부 및 연계전공 설치)** ①미래융합대학 융합교육을 위하여 융합전공학부인 창의융합인재학부를 둔다.
 - ②창의융합인재학부 소속 학생은 2개 학기 이수 후 진로탐색을 통해 미래융합대학내에 설치된 학과를 선택하여 진급하며, 해당학과로 졸업한다.
 - ③미래융합대학 학과간에는 학생의 다양한 학습목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계전공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의 2(비교과과정) 미래융합대학의 6대 역량에 기반한 체계적 형태의 비교과 과정으로 'MJU프라임리더(비교과)'를 시행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2.5.1.)

제 3 장 교과과정위원회

- 제5조(기능) 미래융합대학의 교육과정 편성을 위하여 교과과정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전공 및 교양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 2.전공 및 교양 교과과정 개발 및 개편에 관한 사항 3.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6조(구성)** ①미래융합대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속 학부(과) 주임교수, 필요한 전문가 등으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필요에 따라 외부 관련기관 위원을 2인 이상 위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사무)** 사무는 미래융합대학 교학팀에서 관장하며, 간사는 미래융합대학 교학팀 직원이 담당한다.

제 4 장 수업관리

- 제9조(성인학습자 출석수업 다양화) ①성인학습 재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현장실습 수업, 온·오프라인 혼합수업(블랜디드 러닝), K-MOOC 수업 등으로 할 수 있다. (변경 2020.3.1.)
 - ②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의 경우 해당 학년도 학기별 각 전공(학과) 및 교양의 개설된 총 교과목 학점수의 100분의 40이내에서 한다. (변경 2020.3.1.)
 - ③교과목 성격상 필요에 따라 야외수업 및 현장체험학습 등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장실습보고서 및 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④온·오프라인 혼합수업(블랜디드 러닝)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의 비중은 '온라인 교과목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업의 특성상 특별한 경우 다양한 형태의 오프라인 수업을 포함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각 형태별수업은 집중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 (변경 2020.3.1.)
 - ⑤K-MOOC 수업의 경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관련 개발된 강좌에 한하며, 재학기간 중 학기별 3학점,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학기별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0.3.1.)
 - ⑥성인학습자 수업부담 완화를 위해 집중수업과 집중이수제를 실시 할 수 있으며, 학기당 배정된 총 시간 내에서 허가 받은 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항번호 변경 2020.3.1.)
- 제10조(출석 및 성적인정) 출석은 해당학기 중 3분의 2이상을 출석한 자에 한하여 교과목 성적을 인정한다.

제 5 장 선행학습경험인정제

제11조(선행학습경험인정제) ①선행학습경험인정제(RPL: Recognition of Prior Experiential Lear

- ning, 이하 'RPL'이라 한다)는 성인학습 재직자의 입학전 근무경력, 학습경험 등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 ②RPL의 대상은 미래융합대학 소속 학과(계약학과 포함)에 한한다.
- ③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학팀에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과 상담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12조(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대상 범위) 학점인정이 되는 선행학습경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최대 인정학점은 해당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으며, 수강신청 기준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1.고등교육법 제23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8항에 따라 미래융합대학에 입학하는 학습자의 입학전 산업체 근무경력 학점인정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 2021.1.1.)
 - 2.자격증 및 학점은행과목 이수 등 입학 전 취득한 학습경험에 대해서 최대 6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인정하며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다. (변경 2021.1.1.)
 - 3.미래융합대학에서 개설한 특별과정을 이수한 경우 (신설 2023.7.1.)
 - 4.기타 선행학습 학점인정위원회에 [서식1]선행학습 학습인정 자격과목 신청서, [서식2]선행학습 학점인정 자격과목 기술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학습경험에 해당할 경우
 - (호번호 변경 2023.7.1.)
- 제13조(학점인정 절차) ①RPL 학점을 인정 받기 위한 신입생은 입학 후 3개월 내에 주임교수 의 확인을 받아 학점인정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교학팀에 제출해야 한다.
 - ②접수된 학점인정신청서를 통하여 단과대학에서는 선행학습 학점인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신 청서를 심의 후, 그 결과를 교육지원처장에게 보고한다.
- 제14조(선행학습 학점인정위원회 구성) ①학점인정 신청서를 심의하기 위
 - 하여 선행학습 학점인정위원회를 둔다.
 - ②선행학습 학점인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융합대학장으로 하며, 위원은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15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16조(위원회의 사무)**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관련 업무는 미래융합대학 교학팀에서 관장하며, 간사는 교학팀 직원으로 한다.

제 6 장 미래학습진로상담센터(장명 변경 2019.9.1.)

제17조(센터 설치) 성인학습자의 친화적 교수학습 방법 개발 및 보급, 학내 구성원의 이해제고 및 동참 유도, 진로 및 상담 지원, 학습이력관리 및 경력개발,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 미래

학습진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변경2019.9.1.)

- 제18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변경 2019.9.1.)
 - 1.성인학습자 친화적 교수학습 방법 개발 및 보급(변경 2019.9.1.)
 - 2.진로 및 상담 지원(변경 2019.9.1.)
 - 3.학습이력 관리 및 경력개발 지원(변경 2019.9.1.)
 - 4.온라인 학습지원(변경 2019.9.1.)
 - 5.기타 학습 및 진로 상담관련 사항(변경 2019.9.1.)
- 제19조(구성) ①센터에는 센터장, 전문상담원, 직업상담사, 상담조교를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임명한다.(변경 2019.9.1.)
 - ②센터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미래융합대학장이 되고, 위원은 상담 및 진로 전문가 등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20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21조(위원회의 사무)** 사무는 센터에서 관장하며, 간사는 센터 직원이 담당한다.(변경 2019.9.1.)

제 7 장 미래학습진로상담센터(신설 2023.7.1.)

- **제22조(과정 개설 및 운영)** 외부기관의 인정·평가 등을 통해 개설한 특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3.7.1.)
- 제23조(나노디그리 수여) 특별과정 이수자에 대하여 미래융합대학장 명의의 나노디그리(서식 4) 를 수여할 수 있으며, 수여기준은 외부기관의 인정·평가 등을 통해 확정된 사항에 따른다. (신설 2023.7.1.)
- **제24조(미래융합대학 나노디그리 인증위원회)** ①나노디그리 수여 대상자에 대한 자격 조건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3.7.1.)
 - ②위원장은 미래융합대학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특별과정 관련자 등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23.7.1.)
 - ③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신설 2023.7.1.)
 - ④사무는 교학팀에서 관장하며, 간사는 교학팀 직원이 담당한다. (신설 2023.7.1.)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최

이 내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선행학습 학점인정 대상 자격종목 및 인정대상 세부내역 변경사항

(신설 2020.7.1., 변경 2021.1.1.)

학과	유형	인정구분	자격증	급수	신청과목	인정학점	이수구분	비고
사회복지학과	2유형	자격증 학점인정	사회복지사	2	사회복지개론	3	전공	사회복지학 개론으로 과목명변경 예정
부동산학과	2유형	자격증 학점인정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	부동산중개론 주택유지관리기술	3	전공	
			감정평가사	_	감정평가이론			
			행정사	_	새행정학			
			법무사	_	계약법			
법무행정학과	2유형	자격증 하저이저	사회조사분석사	2	조사방법론	3	전공	
		학점인정	감정평가사	_	재산법		_ 0	
			공인중개사	-	계약법			
심리치료학과	1유형	전공 교육과정 목표일치 학점인정	직업상담사	1	선행학습학점 인정과목	3	전공	
			16001	2				
	2유형	자격증 학점인정	경영지도사	_	- 1급 2급 선행학습학점 1급 인정과목 2급	2학점	전공	
			공인회계사	_				
미래융합			전산회계			1학점		
경영학과			전산세무			2학점		
						l학점		
			A = 3 3 .3	1급		2학점		
			유통관리사	2급		1학점		
	2유형	성 자격증 학점인정	컴퓨터그래픽스	1급		2학점	전공	
			웹디자인	1급	선행학습학점 인정과목			
			컬러리스트	1급				
plelelelol			서비스 경험디자인	1급				
멀티디자인 학과			실내디자인	1급				
			Autocad	1급			-	
			3D프린터	1급	3D프린팅 / 선행학습학점 인정과목 중 선택			포트폴리오 평가에따라 차등인정
학점은행 (전체학과)	3유형	학점은행 이수 교과목	교양학점 인정 교 [선	교양				
기타 (전체학과)	3유형	교내 선행학습 프로그램	[선행학습학점	교양				

[▶] 유형의 종류 : [1유형]학과 교육과정 (일치/유사) 연계 자격증 학점인정, [2유형] 전공과목-(유사) 시험과목 학점 인정 [3유형] 학점은행 또는 미래융합세미나를 이수한 경우

[서식 1] 선행학습 학점인정 자격과목 신청서 - 학과신청용

(신설 2020.7.1., 변경 2021.1.1.)

신청학과								
신청자	성명				직	명(급)		
건정사	76 76				연	락처		
신청 내용	과목코드	교과목명	이수구분	신청자격증명	급수	발급기	관	인정학점
	000	(가칭)RPL1						
	합 계							

* 선행학습 학점인정 자격과목 제출 관련 학과 교수 동의 위의 내용에 대해 충분한 사전심의 과정을 거쳤으며, 제출하는 내용에 동의합니다.

학과	이름	직책	서명

000학과는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자격과목 신청서를 제출하며,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관련된 모든 규정(학칙) 및 지침사항을 준수 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00학과 주임교수 (인)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장 귀하

[서식 2] 선행학습 학점인정 자격과목 기술서(과목별 제출) - 학과 신청용

(신설 2020.7.1., 변경 2021.1.1.)

과목별 선행학습 학점인정 자격과목 기술서

신 청 학 과				제 출 자			(서명)		
학점인정 유형		□ [1유형] 학과 교육과정 (일치/유사) 연계 자격증 학점인정 (전공 교육과정 목표 - 자격취득 목표 일치 시 학점인정)							
(☑표시)	□ [2유형] 전공과목 - (유사) 자격증 시험 과목 학점 인정							
교과목/코드	구분	□ 전공과목 [코드:]					
(☑표시/코드 * 중복인정기		□ 선행학습인정과목 [코드:] 이수구분							
	번호	자격증명	급수	발급기관	인정교과	목	인정학점		
세부	1								
신청내용	2								
	3	(예시)							
기타사형	<u>}</u>	(에시) - 포트폴리오 평가 결과에 따라 인정학점 차등지급 - 자격증 1급에 한하여 전공과목 및 선행학습과목 중 학생 선택 가능하록 함							
		선행학습	구 학점	인정 근거(사유)					
증빙자료 (필요시 제출)									

[서식 3] 선행학습 학점인정신청서 - 학생신청용

(신설 2020.7.1., 변경 2021.1.1.)

접 수 자

학과명					학번					
성명					연락처					
					E-mail					
주소										
학점인정 유형 (☑ 체크표시)			□ [1유형] 학과 교육과정 (일치/유사) 연계 자격증 학점인정 □ [2유형] 전공과목- (유사) 시험과목 학점 인정 □ [3유형] 학점은행 또는 교내 선행학습프로그램(예비대학과정)을 이수한 경우							
	유형	번호	자격증명	급수	발급기관	학점인정교과목명	신청학점			
		1								
	1,2유형	2								
신 청		3								
· 내 용		1	교과목(과정)명 [학점은행/교내 선행학습과정]	이수구분	이수기관	학점인정교과목명	신청학점			
	3유형	2								
		3								
			신청학	학점 합계						
[공통사항] ● 고등학교 졸업 후 취득 자격증에 한해 인정함 ● [자격증 학점인정]의 경우, 최대 학점인정 범위인 3학점 이내에서 유형 1,2 교차 인정함 - 최대 학점인정 범위 안에서 유형별 최대 3개 자격(과목)까지 인정 - 기술사 및 기능장의 경우 1개 자격증을 최대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함 ● [학점은행과목 학점인정]의 경우,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학점만 인정되며 학위 및 자격증취득을 목적으로 이수한 학점은 인정 불가함 - 1개 교과목당 1학점 부여, 2과목까지 인정가능(교양학점인정) ※ 편입의 경우 선행학습인정 대상자에서 제외										
본인은 명지대학교 입학 전 학습경험에 대한 학점인정제도인 선행학습학점인정제를 모두 이해하였으며, 위의 교과목에 대해서 학점인정을 신청합니다. 첨부된 자료와 상기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을 경우 학점인정의 취소 등을 포함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명지대학교 총장 귀하										
,	나. 학점은	·의 경 ·행제 '예ㅂ	우 : 자격증 사본 (원본 대결학점 인정의 경우 : 국가평년	생교육진흥						

고

(신설 2023.7.1.)

제 호

나노디그리 인증서

성 명: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에서 개설한 () 과정을 이수하고 그 역량을 갖추었기에, 이를 인정하여 나노디그리 인증 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장 ○○박사 ○ ○ ○ (직인)